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75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문진석 · 이재관 · 이인영
강준현 · 복기왕 · 서미화
김교홍 · 박범계 · 천준호
박정현 · 이연희 · 안태준
김용만 · 손명수 · 최혁진
이춘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 · 매각 · 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벌칙)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0조의2(몰수·추징) (생략)</u>	<u>제50조의2(벌칙)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50조의3(몰수·추징) (현행 제50조의2와 같음)</u>